

## 디아코니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부 재학생(이하 '재학생'으로 한다)이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통하여 대학의 교훈에 맞는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였음을 인정하는 핵심역량인증제인 디아코니아인증에 관한 운영기준 및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인증이란 본교 학생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면 매학년도 별도로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조의2(인증등급 산정기간)** 4학년 2학기 말에 인증등급을 산정한다.

**제2조의3(인증시기)** 신청서 제출은 기획조정처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로 하며 12월 중에 한다. 다만 심사는 4학년 2학기 말까지 이수한 비교과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한다. (2024.02.21.개정)

**제3조(인증방법)** ① 인증이란 디아코니아+ 체계에 따라 디아코니아인증위원회에서 정한 핵심역량별 기준 점수를 모두 달성하여야 하며 종합인증으로 시행한다.

② 4대 핵심역량별 인증 가중치를 적용하여 총점 80점 이상이 되면 인증통과로 하는 종합인증으로 한다.

1. 섬김 인증 : 40 점
2. 소통 인증 : 20 점
3. 창의 인증 : 20 점
4. 글로컬 인증 : 20 점

**제4조(인증영역)** ① 인증 점수는 교과, 비교과, 학생의 자기 설계 활동 영역으로 종합 산출한다.

② 교과의 범위는 교양교과목 전부로 하며, 교양과목 중 각 핵심 영역별 지정 교과목으로 하되, 영역별 교과목은 아래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교과목과 핵심역량 지정은 교양교육과정 실무위원회에서 지정한 후 교양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정받아 디아코니아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3.03.15.개정)

③비교과란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대부분 포함하되,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 상에 등록되어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 담당센터 지정 프로그램으로 하되, 비교과 실무위원회에서 지정한 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인증한 후 디아코니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3.03.15.개정)

④자기설계활동이란 학생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여 수행하고 결과를 산출한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자격증, 공인시험, 학생회 활동, 교외프로그램 등으로 점수에 산정되지 않으나 가산점으로 적용 한다. (2023.03.15.개정)

**제5조(주관부서)** ① 인증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처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로 한다.

(2024.02.21.개정)

② 주관부서는 인증에 관한 제반사항의 운영 및 지원을 담당한다.

**제6조(디아코니아인증위원회)** ① 기획조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처장 포함) 추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증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2024.02.21.개정)

② 디아코니아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인증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증 기준 연구, 개발 및 환류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제7조(인증산출방식)** ① 교과, 비교과, 자기설계활동의 실적 점수 산정은 동일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

② 교과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비교과와 자기설계활동은 교과에 대한 등가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한다.

③ 인증산출을 위한 요소는 노력수준, 성취수준, 각 핵심역량별 가중치는 상 50%, 중 30%, 하 20%으로 정한다. 단, 인증산출 필요시 디아코니아인증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노력수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교과의 경우 교과목별 학점수를 반영한다.
2. 비교과 마일리지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정한 비교과 마일지를 교과의 1학점에 해당하는 등가 학점을 적용한다.
3. 학생의 자기설계활동의 경우 등가 학점은 1로 고정한다.

⑤ 성취수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교과는 학생이 지정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환산표(별지 3 참고)에 따른 점수를 반영한다.
2. 비교과는 80점으로 고정한 점수를 적용한다.
3. 자기설계활동은 별도의 환산표를 적용한다.

⑥ 삭제

**제8조(인증등급 산정기간)** 삭제

**제9조(자료입력)** 삭제

**제10조(인증절차)**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인증 취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부서와 학과에 안내 및 공고한다.

②주관부서는 매년 인증 현황을 파악하여 핵심역량별 인증과 종합인증 결과를 개별 학생에게 통보한다. 이를 위해 입학 시에 학생들에게 개인정보사용동의서를 받는다.

③주관부서는 4학년 2학기에 신청한 학생 대상으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④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한다.

⑤주관 부서는 최종심의 후에 인증결과를 대상학생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 10조의2(지원자격)** ① 디아코니아+ 인증체계에 따라 본교 재학생 중 다음 지정한 교과 및 비교과 이수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②교과의 범위는 교양으로 정하며 비교과프로그램의 경우 인성·사회정서역량을 참여해야 한다. (2023.03.15.개정)

**제11조(인증서 수여 및 인증내역 표기)** ① 졸업학기에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증서를 수여한다.

② 성적표에 인증 이력사항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인증 결과 활용) 삭제**

**제13조(인증 의견수렴)** 규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된 내용을 개정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디아코니아인증위원회에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졸업예정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시행일) 2021학년도 졸업예정 대상자의 경우, 다움감성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이전의 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다움감성인증제도를 제외한 디아코니아인증을 기반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디아코니아+ 인증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